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'중요한 사업상 목적'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절차 변경 안내 및 협조요청

1.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원칙이나,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공항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,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 자가진단하고 능동감시(매일 1회 건강상태 전화 확인)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격리면제서는 **중요한 사업상 목적**·학술적 목적·기타 공익적·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발급 (내외국인에 공통 적용)
 - '한-중 신속통로'를 통해 중국을 단기방문(7일 이내)한 후 귀국하는 국내 기업인도 **중요한 사업상 목적** 격리면제 대상으로 포함 (내국인만 대상)
3. 최근 **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**, 점차적으로 통상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국가간 **교류를 단계적·점진적으로 확대해** 나갈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**해외출장 우리 기업인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'중요한 사업상 목적' 격리면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, 시범적용할** 예정입니다.

○ **변경 주요 내용** ※ 상세 별첨 참고

- 기존 '중요한 사업상 목적' 격리면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(내외국인 공통)
- **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**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분류

① (기존) 한-중 신속통로 기업인 지원: 한-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을 단기방문(현행: 7일 → **변경: 14일 이내(현지 격리기간 제외)**)한 후 귀국시 '중요한 사업상 목적' 격리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

② (신설) 베트남, 캄보디아, 중국(홍콩, 마카오 제외) 방문 기업인 지원: 우리 기업인이 3개국* 중 한 국가를 **단기방문(14일 이내, 현지 격리기간 제외)**한 후 귀국시, 관련 부처가 '(사업상) 출장목적의 중요성'을 인정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

*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출장 수요, 방대본의 국가별위험도 평가 결과 등 고려

** 한-중 신속통로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인들은 동 절차 이용 가능

③ 여타 절차는 기존 '중요한 사업상 목적'상 격리면제 절차와 동일

- ※ 다만, 신청인이 관련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시 출장기간(입출국 항공편,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등), 출장목적 등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
 - 관련부처는 외교부(재외공관)에 발급 요청시 동 정보 공유

④ 신청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

- 현지 체류기간(격리기간 제외)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
-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**코로나19 진단검사**를 받아야 하며, 검사결과 **음성인 경우**에 한해 격리 대신 자가진단앱 설치 후 **자가진단하고 능동감시**(매일 1회 전화 확인) 실시 안내
- 격리면제서상 출발일시를 초과하여 출발할 경우 격리면제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, 재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

⑤ 시행시기 : '20.7.30(목) 0시부터 관련기관 신청 접수 개시

4. 이에 각 기관에서는 상기 제도 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외교부) 해당 공관(주중국지역 공관, 주베트남대사관, 주캄보디아대사관 등)에 변경사항 안내
 - (재외공관) 격리면제서 발급시 현지 격리기간이 신청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
- (관련부처*) 신청인의 격리면제서 접수 및 출장목적의 중요성 등 심사·판단
 - 접수시 신청인 출장관련 정보(입출국 항공편,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등), 출장목적 등을 확인하여 발급요청시 관련 정보를 외교부(재외공관)에 공유
- * 산업부(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), 문화부(문화·체육), 농림부(농림·축산·식품), 국토부(건설·교통), 해수부(수산), 금융위(금융), 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
 - 여타 산업: 산업부에서 총괄하여 조치
- (검역소·법무부) 입국심사 단계에서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본인여부 철저 확인 및 관리

5. 금번 국내기업인 단기체류 귀국시 격리면제는 우선 **상기 3개 국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**한 후, 국내 및 대상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이, 격리면제 대상자 증가량 및 이로 인한 방역당국의 업무부담 증가 정도 등 **제반 상황을 평가하여 확대·축소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·개선**해 나갈 예정임을 참고 바랍니다.

- 붙임 1.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절차 변경 안내
2.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표(변경후)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외교부장관(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), 외교부장관(영사서비스과장), 법무부장관(출입국심사과장), 질병관리본부장(검역지원과장),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(검역1과장),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(검역2과장), 국무조정실장(산업과학중기정책관), 국무조정실장(사회복지정책관), 문화체육관광부장관(비상안전기획관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통상정책총괄과장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코로나19대책반장), 국토교통부장관(해외건설지원과장), 해양수산부장관(코로나19긴급대응반장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(국제협력과장), 비상금융과장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신남방통상과장)

서기관 임수현 부이사관 전결 2020. 7. 29.
배경택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0. 7. 29.) 접수
중앙사고수습본부-19295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(어진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811 팩스번호 044-202-3991 / shlim09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